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(곽상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76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0. 2.

발 의 자 : 곽상언 · 권향엽 · 박지원
이훈기 · 이해식 · 강준현
한정애 · 이정문 · 안도걸
김현정 · 이재관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.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. 또, 같은 날 신설된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.

한편, 「국민연금법」 제108조제1항은 가입자의 자격 · 연금보험료 · 급여 등에 관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그 처분을 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같은 법 제110조제1항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

하고 있음.

즉, 「국민연금법」 제108조와 제110조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 의무 자체를 법률에 두지 아니하고 하위법령에만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,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‘행정소송 등 쟁송수단의 안내의무’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.

따라서, 「국민연금법」에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‘행정소송 등 쟁송수단의 안내의무’를 직접 규정하여, 국민연금 가입자·수급권자 등 심사청구인·재심사청구인이 결정·재결을 통지 받을 때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「국민연금법」 제108조와 제110조를 개정하고자 함(안 제108조제3항·제4항 및 제110조제2항·제3항 신설).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8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중전의 제3항) 중 “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”을 “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된”으로 한다.

③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심사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제3항에 따라 결정을 통지하는 경우 심사청구인에게 제110조에 따른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재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. 다만,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이미 심사청구인이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110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중전의 제2항) 중 “제1항에 따른”을 “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”로 한다.

②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재결한 때에는 그 재결 내용을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

재심사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재결을 통지하는 경우 재심사청구인에게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. 다만, 재결을 통지하기 전에 이미 재심사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08조(심사청구) ①·② (생략) <u><신설></u>	제108조(심사청구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심사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.
<u><신설></u>	④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제3항에 따라 결정을 통지하는 경우 심사청구인에게 제110조에 따른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. 다만,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이미 심사청구인이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다.
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사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된 -----.
제110조(재심사청구) ① (생략)	제110조(재심사청구) ① (현행과 같음)

<u><신 설></u>	<u>②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재결한 때에는 그 재결 내용을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재심사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③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재결을 통지하는 경우 재심사청구인에게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. 다만, 재결을 통지하기 전에 이미 재심사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u>
<u>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</u>	<u>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-----</u> <u>-----:</u>